

2026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

- 대상: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
- 신고·납부기한: 2026년 3월 31일(화)
- 보험료 신고방법: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
 ※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(QR코드 연계)



안내책자 안내영상

- ▶ 전자신고 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를 통해 신고
- ▶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, 지사)에 제출

○ 보험료 산정방법

2025년도 확정보험료 = 2025년도 보수총액 × 보험료율

<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방법 >

- ▶ 보수란,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함
- ▶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외주공사 등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로 보수총액 산정 가능
 ※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한 보수 포함
- ▶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있으면 분리하여 기재

구분	산재 보험	고용 보험
본사 보수총액	사무(내근)직원 보수	사무(내근)직원 보수 +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
건설일괄 보수총액	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+ 현장일용직 보수+(외주공사비×29%) + 노무제공자(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보수로 산정)	현장일용직 보수 + (외주공사비×29%)

2026년도 개산보험료 = 202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× 보험료율

<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방법 >

- ▶ 2026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산정
- ▶ 202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5년도 보수총액의 70/100이상 130/100이하인 경우, 2025년 보수총액을 2026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
 (예시)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,000만원이고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인 경우,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확정보수총액 대비 70%~130% 사이이므로 1,000만원으로 기재

○ 보험료 납부방법

- ▶ 일시납부 원칙.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,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 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% 공제
- ▶ 가상계좌, 인터넷지로(뱅킹),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, 자동이체 사업장도 3.31. 납기인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납부 필요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1588-0075)로 문의 바랍니다.